

의안번호	2201738
의 퇴 인	서영교 의원
회 답 일	2024. 9. 24.
추 계 번 호	24F202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학교 등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학교 등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5년 25.2억원, 2027년 27.8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79.4억원(연평균 26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5~2027년

(단위: 억원)

	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학교 등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42조제1항)	소계	-25.2	-26.4	-27.8	-79.4	-26.5
	취득세	-10.8	-10.8	-10.8	-32.4	-10.8
	주민세	-0.2	-0.2	-0.2	-0.7	-0.2
	재산세	-14.1	-15.4	-16.8	-46.3	-15.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2조제1항 (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)	○ 학교 등*의 기숙사 목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※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- 감면율: (취득세·재산세·주민세 사업소분) 100% ※ 단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산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% 감면율 적용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2조제1항 (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학교 등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행정안전부 「지방세통계연감」 상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
 - (취득세 및 주민세) 최근 5년(2018~2022년)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 - (재산세) 2022년 감면실적이 최근 3년(2020~2022년) 건당 감면액의 연평균증가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 개요) 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,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주민세(사업소분), 재산세를 감면
 - 감면율: (취득세·재산세·주민세 사업소분) 100%
 - － 단, 「지방세특별제한법」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산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% 감면율 적용
- (감면실적) 기숙사 등에 대한 최근 5년(2018~2022년) 지방세 감면실적은

다음과 같음

[표 2] 기숙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추이: 2018~2022년

						(단위: 억원)
	2018	2019	2020	2021	2022	연평균 (‘18~’22)
취득세	11.6	16.9	7.7	17.1	0.6	10.8
주민세	0.1	0.2	0.1	0.6	0.2	0.2
재산세	13.9	10.0	11.6	12.3	10.9	—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(취득세) 최근 5년(2018~2022년) 연평균 감면액(10.8억원)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(주민세) 최근 5년(2018~2022년) 연평균 감면액(0.2억원)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(재산세) 2022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3년(2020~2022년) 건당 감면액의 연평균증가율(9.1%)을 적용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
 - 민간 사업시행자에 위탁하여 기숙사를 건설·운영하다가 협약기간의 만료로 기숙사의 시설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될 경우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2조 제1항이 아닌 같은 법 제41조(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)의 적용을 받게 되어 감면액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음
 - 다만, 건당 감면액의 경우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건당 감면액의 연평균증가율에 따라 재산세 감면액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

[표 3] 기숙사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 추이: 2020~2022년

		2020	2021	2022	연평균증가율(%) (‘20~’22)
재산세	감면액(억원)	11.6	12.3	10.9	—
	건수(건)	123	123	97	—
	건당 감면액(만원)	941	1,002	1,120	9.1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4] 재산세 감면액 추정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	2025	2026	2027
재산세	10.9	11.9	12.9	14.1	15.4	16.8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학교 등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5년 25.2억원, 2027년 27.8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79.4억원(연평균 26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5~2027년

(단위: 억원)

	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학교 등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42조제1항)	소계	-25.2	-26.4	-27.8	-79.4	-26.5
	취득세	-10.8	-10.8	-10.8	-32.4	-10.8
	주민세	-0.2	-0.2	-0.2	-0.7	-0.2
	재산세	-14.1	-15.4	-16.8	-46.3	-15.4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고은비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고은비	02-6788-4839	eunbi15@assembly.go.kr